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7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정 당시와 기능이 달라진 부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재정비함(안 제9조, 제11조)

나. 공공성이 강한 단지관리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재정비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11. 7. ~ 11.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창조산업과 안경모 (☎ 2133-921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업,연구소”를 “기업, 연구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제12조제3항 중 “민간”을 “공공단체 또는 민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된”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제2조(정의) ----- ---- <u>뜻</u> 은 -----.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입주자와 계약 등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외의 <u>기업, 연구소</u> , 교육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u>기업, 연구소</u> ----- -----.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시장이 택지 공급을 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u> 을 따른다.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 ----- ----- <u>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u> -----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u>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u> 」 <u>제13조의2제4항</u> 에 따라 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 ----- ----- -- 「 <u>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u> 」 <u>제13조의2제2항</u> ----- -----.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 <u>외국인투자촉진법</u> 」 제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 ----- ----- ---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 제

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1. (생략)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4. (생략)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② (생략)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

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

제11조(중소·벤처기업 지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1. (현행과 같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공단체 또는 민간--.

제14조(구성) ① -----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과 위원 중 호선된 사람 1
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과 국내외 유
수기업의 최고경영자, 대학교수
등 디지털미디어시티 발전과 관
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16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관리·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생략)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하는 -----
-----.

③ 위촉직 위원-----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례」에 따라 -----.

제18조(운영세칙) -----

----- 필요한 -----
-----.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현행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같음) ② ----- ----- <u>범위에서</u> <u>「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u> <u>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u> ---- -----. 제21조(시행규칙) ----- -- <u>필요한</u> ----- -----.
--	--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단순 문구 수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경제실 창조산업과 안경모 (☎ 2133-9211)